

의안번호	제549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1일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9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1일

발 의 자 : 이의영, 박경숙, 김꽃임, 김국기,
이양섭,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조항 정비 및 신설 (안 제6조, 제6조의2)
- 피해 가축농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7조)
-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를 비상설화함 (안 제7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4.
- 협 의 : 농정국 동물방역과
- 비용추계 :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사회재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축산농가 지원”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지원단원의 교육 및 육성
7.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축전염병의 예방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가축 및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방역시설 운영 및 개선사항
2. 가축의 검사, 투약, 소독(약욕),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소독관리
4.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한 매몰지 확보 방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 및 지원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중전의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가.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나.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인 경우 그 협의회의 안전 심사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사회재난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생략)</p> <p><u><신 설></u></p> <p>제6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p> <p>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p> <p>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p>	<p><u>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 지원----- -----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p> <p>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p> <p>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p>

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지원단원의 교육 및 육성

7.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가축 및 축산관계 시설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방역시설 운영 및 개선사항

2. 가축의 검사, 투약, 소독(약욕), 살처분에 관한 사항

3.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소독관리

4.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한 매몰지 확보 방안

5. 동물의 복지 및 안전한 가축 생산을 위한 대책

립·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6. 가축방역지원단원의 교육 및 육성

7.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가축의 살처분에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 밀집사육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 1. ~ 4. (생략)

제7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조의2(가축전염병의 예방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가축 및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 1. 방역시설 운영 및 개선사항
- 2. 가축의 검사, 투약, 소독(약욕), 살처분에 관한 사항
- 3.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소독관리
- 4.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한 매몰지 확보 방안

제7조(지원사업) -----
----- . 다만,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 및 지원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7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생 략)

3. 협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나.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4. 협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가. ~ 다.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위원은 협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나.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다. ~ 마.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협회의 안건 심사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2의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은 경우

⑥ ~ ⑦ (생략)

⑤ ~ 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관련법령 발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

탁 사유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충청북도 위원회 운영평가 관련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로 분류됨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

○ 작성자

농정국 동물방역과장 신동양